|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한 해석(3)**  法釋[2011] 제18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 약간문제와 관련한 해석(3)》을 2011년 7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525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011년 8월 9일  혼인가정의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의 혼인법 적용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당사자가 혼인법 제10조 규정이외의 상황으로 혼인무효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혼인등기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출하면서 혼인등기 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조** 부부일방이 인민법원에 친자관계 부정 확인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였고 상대방이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친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친자관계 부정 확인을 청구하는 일방의 주장이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중명하였고 상대방이 반증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친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일방의 주장이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3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모쌍방이나 일방이 자녀 양육의무를 거부하고 미성년 또는 생활 자립능력이 없는 자녀가 양육비용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해야 한다.  **제4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일방이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단 하기 중대이유가 있고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방에게 부부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 탕진하거나 부부 공동채무 위조 등 부부 공동재산의 이익을 손상하는 엄중한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  (2) 법정 부양의무가 있는 일방의 친족이 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도 상대방이 관련 의려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  **제5조**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에서 혼인 후에 발생한 천연이자와 자연 부가가치를 제외한 수익은 부부 공동제산으로 해야 한다.  **제6조** 혼인전이나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당사자가 일방의 소유인 부동산을 상대방에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증여일방이 증여 부동산 등록변경 전에 증여약속을 철회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행재결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계약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혼인 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등록이 출자인의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법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녀 일방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부동산은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으로 한다.  쌍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등록이 자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각각 자기 부모가 출자한 액수에 따라 공동소유로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의 배우자가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를 학대, 유기 등 인신권리 손상행위나 재산권익 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자격이 있는 자가 특별절차에 따라 후견인관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후의 후견인이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측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수리해야 한다.  **제9조** 남편이 와이프가 자의로 임신종지를 행하여 생육권리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 부부쌍방이 생육여부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확실히 관계가 파열되고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에서 조정하여도 무효인 경우에는 혼인법 제3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부부일방이 혼인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부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혼인 후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은행대부금을 상환하였는데 계약금 지불자의 명의로 부동산등록을 한 경우 이혼 시에 당해 부동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록자 측에 돌리기로 판결하고 미상환 채무는 소유권 등록 측이 부담하게 한다. 쌍방이 혼인 후에 공동으로 상환한 금액 및 그 재산의 부가가치 부분에 대하여 이혼 시에는 혼인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록측이 상대측에 보상해야 한다.  **제11조** 부부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부공동소유의 가옥을 매각하였고 제3자가 선의로 매입하였으며 합리한 가액을 지불하고 소유권 등록수속을 필한 경우에 부부일방이 당해 가옥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부부일방이 제멋대로 부부공동소유가옥을 처분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조성하였고 이혼 시에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으로 가옥을 구입하고 부부일방 부모의 명의로 가옥을 개축하여 그 부모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경우 이혼 시에 부부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당해가옥을 분할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 가옥구입 시의 출자한 자금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이혼 시에 부부일방이 정년퇴직 전이고 양로보험금 수령조건 미달인데 상대방이 양로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아니한다. 혼인 후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양로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이혼 시에 부부일방이 양로금 계정에서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지불한 부분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지지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혼인등기나 인민법원에서 합의하여 이혼하는 조전으로 재산분할합의를 달성하였으나 쌍방이 이혼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방이 이혼소송에서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해 재산분할합의의 무효를 인정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은 실정에 근거하여 분할해야 한다.  **제15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일방이 상속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지 못하였는데 이혼 시에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상속인 간에 실지 분할한 후에 별도로 소송해야 한다고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부부간에 차용합의서를 체결하고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대차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기타 개인사유에 사용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부쌍방의 약정으로 간주하여 이혼 시에는 합의의 약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부부쌍방에게 모두 혼인법 제 46 조에서 규정한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혼 후 일방이 미처분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하여 당해재산이 확실히 이혼 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인민법원에서 분할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이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전에 공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해석에 준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  **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  **问题的解释（三）**  法释〔2011〕18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已于2011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2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8月13日起施行。  二○一一年八月九日  为正确审理婚姻家庭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相关法律规定，对人民法院适用婚姻法的有关问题作出如下解释：  **第一条** 当事人以婚姻法第十条规定以外的情形申请宣告婚姻无效的，人民法院应当判决驳回当事人的申请。  当事人以结婚登记程序存在瑕疵为由提起民事诉讼，主张撤销结婚登记的，告知其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二条** 夫妻一方向人民法院起诉请求确认亲子关系不存在，并已提供必要证据予以证明，另一方没有相反证据又拒绝做亲子鉴定的，人民法院可以推定请求确认亲子关系不存在一方的主张成立。  当事人一方起诉请求确认亲子关系，并提供必要证据予以证明，另一方没有相反证据又拒绝做亲子鉴定的，人民法院可以推定请求确认亲子关系一方的主张成立。  **第三条** 婚姻关系存续期间，父母双方或者一方拒不履行抚养子女义务，未成年或者不能独立生活的子女请求支付抚养费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四条** 婚姻关系存续期间，夫妻一方请求分割共同财产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有下列重大理由且不损害债权人利益的除外：  （一）一方有隐藏、转移、变卖、毁损、挥霍夫妻共同财产或者伪造夫妻共同债务等严重损害夫妻共同财产利益行为的；  （二）一方负有法定扶养义务的人患重大疾病需要医治，另一方不同意支付相关医疗费用的。  **第五条** 夫妻一方个人财产在婚后产生的收益，除孳息和自然增值外，应认定为夫妻共同财产。  **第六条** 婚前或者婚姻关系存续期间，当事人约定将一方所有的房产赠与另一方，赠与方在赠与房产变更登记之前撤销赠与，另一方请求判令继续履行的，人民法院可以按照合同法第一百八十六条的规定处理。  **第七条** 婚后由一方父母出资为子女购买的不动产，产权登记在出资人子女名下的，可按照婚姻法第十八条第(三)项的规定，视为只对自己子女一方的赠与，该不动产应认定为夫妻一方的个人财产。  由双方父母出资购买的不动产，产权登记在一方子女名下的，该不动产可认定为双方按照各自父母的出资份额按份共有，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八条** 无民事行为能力人的配偶有虐待、遗弃等严重损害无民事行为能力一方的人身权利或者财产权益行为,其他有监护资格的人可以依照特别程序要求变更监护关系；变更后的监护人代理无民事行为能力一方提起离婚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九条** 夫以妻擅自中止妊娠侵犯其生育权为由请求损害赔偿的，人民法院不予支持；夫妻双方因是否生育发生纠纷，致使感情确已破裂，一方请求离婚的，人民法院经调解无效，应依照婚姻法第三十二条第三款第(五)项的规定处理。  **第十条** 夫妻一方婚前签订不动产买卖合同，以个人财产支付首付款并在银行贷款，婚后用夫妻共同财产还贷，不动产登记于首付款支付方名下的，离婚时该不动产由双方协议处理。  依前款规定不能达成协议的，人民法院可以判决该不动产归产权登记一方，尚未归还的贷款为产权登记一方的个人债务。双方婚后共同还贷支付的款项及其相对应财产增值部分，离婚时应根据婚姻法第三十九条第一款规定的原则，由产权登记一方对另一方进行补偿。  **第十一条** 一方未经另一方同意出售夫妻共同共有的房屋，第三人善意购买、支付合理对价并办理产权登记手续，另一方主张追回该房屋的，人民法院不予支持。  夫妻一方擅自处分共同共有的房屋造成另一方损失，离婚时另一方请求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二条** 婚姻关系存续期间，双方用夫妻共同财产出资购买以一方父母名义参加房改的房屋，产权登记在一方父母名下，离婚时另一方主张按照夫妻共同财产对该房屋进行分割的，人民法院不予支持。购买该房屋时的出资，可以作为债权处理。  **第十三条** 离婚时夫妻一方尚未退休、不符合领取养老保险金条件，另一方请求按照夫妻共同财产分割养老保险金的，人民法院不予支持；婚后以夫妻共同财产缴付养老保险费，离婚时一方主张将养老金账户中婚姻关系存续期间个人实际缴付部分作为夫妻共同财产分割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四条** 当事人达成的以登记离婚或者到人民法院协议离婚为条件的财产分割协议，如果双方协议离婚未成，一方在离婚诉讼中反悔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财产分割协议没有生效，并根据实际情况依法对夫妻共同财产进行分割。  **第十五条** 婚姻关系存续期间，夫妻一方作为继承人依法可以继承的遗产，在继承人之间尚未实际分割，起诉离婚时另一方请求分割的，人民法院应当告知当事人在继承人之间实际分割遗产后另行起诉。  **第十六条** 夫妻之间订立借款协议，以夫妻共同财产出借给一方从事个人经营活动或用于其他个人事务的，应视为双方约定处分夫妻共同财产的行为，离婚时可按照借款协议的约定处理。  **第十七条** 夫妻双方均有婚姻法第四十六条规定的过错情形，一方或者双方向对方提出离婚损害赔偿请求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八条** 离婚后，一方以尚有夫妻共同财产未处理为由向人民法院起诉请求分割的，经审查该财产确属离婚时未涉及的夫妻共同财产，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分割。  **第十九条** 本解释施行后，最高人民法院此前作出的相关司法解释与本解释相抵触的，以本解释为准。 |